



# “원각사 주변 유적으로 봐야한다”

◊탑골공원(사적 354호) 안에서 바라본 공사현장. 왼쪽 유리 안에 있는 것이 국보 2호 원각사지 10층 석탑이고 타워크레인인 서 있는 것이 16m거리의 공사현장이다. 사진=복재완 기자



◊원각사지탑에서 본 공사현장.



◊트럭에 실리는 장대석.



◊장대석이 굴착기로 훼손되는 장면.(보리스님 촬영)

서울 종로구 종로2가 원각사에서 불과 16m 떨어진 거리에서 진행되고 있는 대규모 건설 공사 현장에서 장대석과 주춧돌 등이 발견됐는데도 이를 무시하고 공사를 강행했다는 의혹(분지 429호 1면 기사 참조)은 향후 이 지역에서 있을 건설 공사시 최소한의 지표조사를 실시해야 한다는 주장을 증폭시키고 있다.

서울시는 지금까지 탑골공원 주변 지역에 대해 조선시대 연산군 이후 원각사가 폐사되면서 500여 년 동안 민가가 들어서 있었던 점 등을 들어 원각사 관련 유물과 유물은 없는 것으로 판단해 왔다. 그러나 보리스님(원각사 주지)이 촬영한 비디오에 나오는 장대석과 주춧돌 등이 원각사 관련 유물로 판명될 경우 건설 공사 전에 반드시 지표조사를 거쳐도록 하는 법 조항을 마련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확산 것으로 보인다. 종로구청은 조만간 문화재청 문화재위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비디오 판독을 실시, 유물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 “법적으로 아무 문제 없다”**  
 논란이 되고 있는 건물은 지하 2층, 지상 9층 규모의 오피스텔 용도로 지어지고 있다. 2002년 11월 2일 땅파기 공사를 시작해 현재 8층까지 골조공사가 마무리됐다. 그런데 뒤늦게 문제가 불거진 것은 땅파기 공사에서 사찰 장대석과 주춧돌로 추정되는 유물이 발견됐는데도 이를 신고하지 않고 굴착기로 파헤치는 장면을 녹화한 비디오가 최근 공개되면서부터다. 조계종 총무원이 이를 근거로 지난 3일 서울시와 문화재청에 오피스텔 신축 공사가 문화재보호법 등을 위반하고 있다며 즉각적인 조사와 조치를 요구하는 공문을 보냈다.

문화재보호법 제20조(허가사항) 4항 ‘국가 지정문화재의 현상을 변경하거나 그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일 때 문화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조항과 제74조의 2(문화재 지표조사) ‘건설공사의 수립시 문화재 지표조사를 실시해야 한다’는 조항, 제43조(발견신고) ‘매장문화재를 발견한 때에는 발견된 즉시 문화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는 조항을 어겼다는 것이다.

그러나 서울시는 조계종 총무원이 제기한 3가지 위법 사항 가운데 ‘문화재청장의 허가’와 ‘사전 지표조사 실시’ 등 두 가지는 ‘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먼저 문화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조항은 보호구역 밖이기 때문에 ‘문화재청장의 허가사항’이 아니라는 것이다. 서울시청 문화재과 심의 담당 허대영씨는 “오피스텔 신축 지역은 보호구역 밖이기 때문에 보존영향성 검토만 받으면 되고 이에 대해서는 서울시



시- “보호구역 밖, 출토가능성 없다” 판단  
 조계종- 견지동 일대까지 지표조사 반드시 실시해야 하는 것 아니다  
 핵심 지역가능성 높다  
 지역추정

## 원각사지? 들레만 2.5km, 연산군때 폐사

현재 국가사적 354호로 지정된 서울 종로구 종로2가 38-1번지 일대의 정식 명칭은 ‘원각사지’가 아니라 ‘탑골공원’이다. 문화재청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설명을 보면 ‘조선시대 원각사 터에 세운 서울 최초의 근대적 공원으로서 파고다 공원이라고도 불린다’고 나와 있다.  
 원각사(圓覺寺)는 조선시대 4대문에 건립된 유일한 왕실사찰로, 흥복사(興福寺)라는 이름으로 고려시대부터 내려오던 것을 조선 세조 10년(1464) 중창하면서 원각사라 바꿨다. ‘대원각사비문’을 보면 사찰 들레만 2,000보였다. 지금 도량형으로 환산하면 2,480m. 현재 원각사지 10층석탑을 기준으로 반지름이 395m에 달하는 지역을 사적으로 추정할 수 있다.  
 연산군 10년(1504) 폐사되고 경악원(敬業園) 또는 연방원(聯芳園)이라는 기생방이 되었다가 중종 9년(1514) 폐사의 목적을 잃어 공공건물을 새로 짓거나 수리하는 데 사용하도록 함으로써 사찰 건물은 자취를 감췄다. 1895년 탑골공원이 들어섰으며 현재 탑(국보 2호)과 비석(보물 3호)이 남아 있다.

문화재위원회의 적법한 심의 절차를 거쳤다”고 말했다.  
 ‘사전 지표조사 실시’ 부분에 대해 현행 문화재보호법을 보면, 사업면적 3m 이상이거나 매장문화재가 포장된 것으로 인정되는 지역에서 시행하는 건설 공사의 경우 사전 문화재지표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문제가 되는 오피스텔 건설 공사는 3m 이내 면적에 해당하고 “이미 서울시 문화재위원회에 의해 원각사 관련 매장문화재의 출토 가능성은 없는 것으로 판단됐기 때문에 지표조사를 반드시 실시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이 서울시의 해명이다.

**# 지표조사 의무지역 규정해야**  
 서울시·종로구청과 조계종 총무원·보리스님의 의견이 갈리는 것은 바로 이 부분이다. 서울시·종로구청은 매장문화재 출토 가능성이 없는 지역이기 때문에 문화재청장과 서울시장이 협의해 만든, ‘국가 지정문화재의 보호구역 경계로부터 100m 이내에서 지정문화재는 50m에서 건설 공사를 할 경우 문화재보존 영향평가를 받아야 하며 건물 높이는 양각 27도 이내로 한다’는 서울시 조례에 따라 공사 허가를 내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조계종 총무원의 생각은 다르다. 이상규 문화과장은 “원각사지는 들레만 해도 2.4km에 이르고 학자에 따라서는 조계사가 있는 견지동 일대까지 사적으로 추정하기도 한다”며 “이런 경우 현재의 탑골공원과 그 주변지역은 원각사의 핵심지역일 가능성이 높음에도 양각 저축 여부만 검토하고 최소한의 지표조사를 실시하지 않은 것은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보리스님은 “보다 근본적인 문제는 탑골공원 외부지역을 원각사 유적으로 보지 않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름을 밝히길 꺼려한 한 문화재 전문가 역시 “지난해 탑골공원 내 발굴조사에서 지하 2m 지점에 원각사 건물터가 존재하는 것이 확인됐고 관련 유물이 출토된 점으로 미뤄볼 때 매장문화재 출토 가능성을 ‘제로(0)’로 보기는 어렵다”며 “향후 이 지역 건설 공사시 지표조사를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하는 조항을 만들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번 주 내에 있을 비디오 판독 결과에 관심이 모이는 것은 이 때문이다. 땅파기 공차시 굴착기에 파헤쳐진 장대석과 주춧돌이 ‘유물’로 판명될 경우 탑골공원 주변 지역을 원각사 터로 추정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고, 앞으로 이 지역 건설 공사시 지표조사를 전제로 허가를 내야 한다는 주장에 한층 힘을 실을 수 있기 때문이다.

글=권형진 기자

## 현 시대의 병은 어디에서 왔느냐?

천지기운이 돌아가는 법칙을 알아야 세상의 시대 변화를 알겠으니...



오랜세월 산사에서 토굴을 짓고 살면서 동양철학, 운기학(運氣學), 민간 약초만 연구하여온 삼정스님 시대가 변하면 병도 변하고 그시대에 따라 먹는 음식도 약도 변해와 된다고 한다. 현대의 병은 그 원인이 어디에서 왔느냐? 공기, 수질, 농약, 중금속오염 등 각기 공해와 오염의 독수에서 살아가고 있으며 온 인류가 자연의 법칙을 거역한 죄로 예전에 없던 각기 중병을 앓으며 죽어가고 있다. 이 가공할 죽음의 질병들 앞에 우리인간은 완전 무력하다. 옛날 의서에도 세상이 변하는대로 약을 쓰라고 했다. 지금은 화(火)의 기운이 성한 시기다. <음양오행의 화(火)> 모든게 불 세상이다. 신경성 질환, 당뇨, 혈압, 암등 각종 장기의 염증등 전체가 화에서 일어난 병이니 불을 끄려면 자연의 이치상 물을 부어 불을 끄는 이치와 같이 오염의 독을 해독하고 나면 인체의 자연치유력을 증강시켜 스스로 병을 치유된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삼정스님은 우리 인체의 신진대사를 촉진, 기혈(氣血)이 원만이 행기(行氣), 활혈(活血)하고 정심(正心), 삼합일이 되어야 건강한 정신, 건강한육체를 가지게 된다하여 삼정단이라 이름을 붙여 각기 질병들로 인하여 체질이 허약하고 신체의 리듬이 깨져 온갖 성인병으로 몸이 쇠약하여 고생하시는 분을위해 삼정스님은 우리 나라 깊은 산속에서 자생하는 석남엽, 구지뽕나무 등 각기 열매나 뿌리를 어렵게 법제과정을 거친 그 결실을 불자님께 드리게 되었습니다.

## 성인병의 신호한 三淨丹(삼정단)

“특히”

- 가슴 위가 답답하고 머리가 자주 어지러운 분, 빈혈, 저혈압, 뇌기능강화
- 얼굴에 핏기가 없고 이유없이 항상 피곤한 분
- 신허로오는 요통, 신장기능 저하증, 소변이 잦으면서 시원하지 않는 분
- 각종 부인병, 손발이 저리고, 냉한 분, 불임증, 산후병, 갱년기 장애
- 뼈가 약하며 각종 신경통, 요통, 골다공증, 관절염, 디스크
- 각종 신경성질환, 간기능저하증, 간염, 간경화

※ 편두통, 기관지천식, 중풍, 당뇨, 암 등 각종 성인병으로 고생하시는 분은 개별 상담해 드립니다.

상담문의 : 053-652-3300